

도·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(안)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재근의원외 19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1996년 7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7월 10일

3. 주 문

도·농간의 균형발전 도모,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,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추진한 도·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토록 청와대, 국무총리실, 내무부장관, 건설교통부장관, 충청북도지사에게 촉구하기 위함.

4. 제안이유

- 도·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함과,
- 민의전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제22조 제2항 중 도의원 정수를 현행 기준대로 유지토록 하고,
- 도·농 통합당시 약속한 특별지원의 조속한 이행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.

5. 검토의견

금번 도·농 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 안 표명의 당위성
내지는 불가불성을 살펴볼때,

정부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을 통하여 도심지 주변에 인접한 도·농간의 통합
을 추진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행정낭비요소를 줄이고 투자
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,

인위적으로 분리된 동일생활권을 통합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
생활에 관련한 행정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합형태의 시를 이룸으로써 절감
되는 예산을 지역개발비로 전환 투자함으로서,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군간
의 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 사업에 재투자 한다는등을 내용으로한 통합전
홍보내용과는 다르게,

현재의 통합지역 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현 정부의 시책추진
방향은 당초의 공약내용과는 이질적이고도 상이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
이와같은 부분이 시정되고 모든분야에 있어서 공약한 바와 같이 추진되어
도·농지역이 통합됨으로써 오는 실직적인 지역발전 및 문화수준의 향상과
수혜 혜택등의 반사적 이익률 체감적으로 느끼고, 이루위지길 바라는 뜻에
서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,

또한 정부차원에 있어서의 도·농간 통합이후 농촌지역주민들의 소외 의식
가중과 기존 군단위 지역의 특성과 전통문화 소멸등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
해서라도 당초의 통합취지와 상응하고,

통합전 홍보 또는 공약한대로의 내용을 이행함으로 행정추진의 신뢰성확보
차원에서도 본 결의 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볼때
통합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필연적인 주민여론의 결정체라고 사료됨.

6. 첨부

- 도·농 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 (안)